

[부록] 2009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모집요강

2009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모집요강

2009. 8.

2009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모집 개요

■ 보수교육 주요 일정

- ▶ 모집 공고 : 2009년 8월 13일(목)
- ▶ 서류 접수 : 2009년 8월 13일(목)-9월 11일(금)
- ▶ 최종 연수대상자 공고(홈페이지) : 2009년 9월 14일(화)
- ▶ 보수교육 운영
 - 1차 보수교육(실무자과정) : 2009년 9월 17일(목)-9월 18일(금)
 - 2차 보수교육(지도자과정) : 2009년 9월 17일(목)
- ▶ 이수증 교부(우편발송) : 연수종료 이후 2주 이내

■ 주최 · 주관기관

- ▶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 ▶ 주관 : 평생교육진흥원

■ 문의 · 안내

- ▶ 문의처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담당자 서순영, 윤정은
- ▶ 전 화 : 02-3780-9757~8
- ▶ 팩 스 : 02-2070-3145
- ▶ 홈페이지 : www.lll.or.kr

1. 2009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안내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의 전문성 향상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종사중인 현직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운영함.

2. 신청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분류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제1군, 2군으로 구분함.

- 제1군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임.
- 제2군은 제1군에 해당되지 않는 타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임.

- 『2009년도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의 신청자격은 아래 <표 1>의 1, 2군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현직 평생교육사에게 주어짐.

※ 평생교육업무 종사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와 함께 현재 평생교육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음을 기관장이 확인해주는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함([붙임 2] 양식 참조).

※ <표 1>의 1, 2군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을 인정함. 평생교육담당부서에서 근무할 지라도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표 1>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분류

구분	기관 유형
제1군	▶ 평생교육법 제15조에 의한 평생학습도시 ▶ 평생교육법 제20조~제21조에 의한 평생교육전담기구 (시·도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 평생교육법 제29조에 의한 학교의 평생교육 - 각급학교에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에 따라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 ▶ 평생교육법 제30조~제38조에 의한 8대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및 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및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 운영 등과 관련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예.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등) ②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초·중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 개인사정으로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청소년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③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 ④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 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 ⑥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 ⑦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서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 ⑧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신고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은 기관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초·중

구분	기관 유형	
	등학교부설 문자해독 프로그램 실시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예시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단체) 종사자(대학 평생교육원 포함) • 평생교육전담기구 종사자 •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지정 기관 종사자 • 평생학습도시 담당부서 종사자
제2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예시	• [여성발전기본법(2008.6.13)]에 근거한 여성인력개발센터 평생교육 업무 종사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12.31)]에 근거한 지정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업무 종사자

나. 차수별 자격 요건 사항

1) 제1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 실무자 과정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미만 근무하고 있는 현직종사자

2) 제2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 지도자 과정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경영자 및 부경영자로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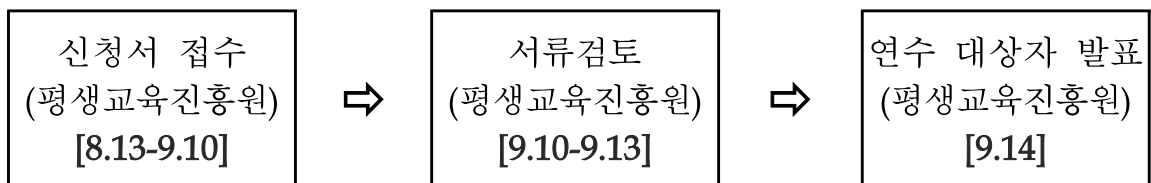
3. 연수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선정 방법 :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대상자의 신청 순서를 토대로 선착순 대상자 선정

나. 선정 인원

- 제1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실무자 과정) : 50명
- 제2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지도자 과정) : 50명

다. 선정 절차



- 제출서류 검토 후 최종 연수대상자는 9. 14(화) 14:00에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www.lll.or.kr) 공지사항에 [접수번호]로 공지함.

- 접수번호는 온라인 접수시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신청] 배너에 접수한 일련번호임. 단, 접수내용을 수정할 시에는 최종 수정된 신청화면의 일련번호가 접수번호이며, 선착순 신청순서도 변경됨.

4. 제출서류 및 서류 작성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아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함.
- 아래의 제출서류 중 1종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함. 서류제

출 기한 안에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함. 추후 보완 불가함.

<표 2>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제출서류

순	제출내용	매수	비고
1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신청서	1매	붙임 1 참조
2	전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매	붙임 2 참조
3	경력인정증빙서류	1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4	평생교육사 자격증	1매	

5. 신청서 접수 및 유의사항

가. 신청서 접수

- 1) 접수 기간 : 2009년 8월 13일(목) ~ 9월 11일(금)
- 2) 접수 방법 : 홈페이지에 온라인접수

[1차 접수]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홈페이지 등록(www.lll.or.kr)
○ 【붙임 1.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신청서】 , 【붙임 2. 전담경력확인서】 , 【붙임 3. 경력인정증빙서류】 , 【붙임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에 해당하는 내용을 파일(날인 제외)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함.

- ※ 온라인 접수는 평생교육정책본부 홈페이지(www.lll.or.kr) 오른쪽 하단의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신청] 배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 [붙임 1-4]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탑재해야 함. 향후, 원본제출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신청자 원본 보관).
- 접수 문의 : 평생교육진흥원 연수문해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담당자 서순영 윤정은
- 문의전화 02) 3780-9757~8

나. 접수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 접수한 서류는 수정 및 삭제, 확인이 불가함. 불가

피하게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 보수교육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수정사항을 확인해야만 수정된 서류로 접수됨.

- 원본제출 요청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방문접수 불가함.

7. 2009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운영 일정

가. 제1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실무자 과정) 운영 일정

- 운영기간 : 2009년 9월 17일(목)-2009년 9월 18일(금)
- 운영 일정표

■ 첫째 날(9월 17일(목))

시 간	주 요 내 용
10:00-10:30	개회식 사회: 이해영(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장) 인사말 : 박인주(평생교육진흥원장)
10:30-11:00	<기조강연> 평생교육사의 새로운 비전(역할 및 비전 개발)
11:00-11:10	휴 식
11:10-12:10	<공통강좌> 평생교육의 철학적 재구성 및 역사적 재이해
12:10-13:10	중 식
13:10-14:30	평생교육법의 이해(사회교육법, (구)평생교육법, (개정)평생교육법)
14:30-14:40	휴 식
14:40-16:00	평생교육 정책의 이해(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동향 및 변화추이)
16:00-16:10	휴 식
16:10-18:00	평생교육사 네트워크의 시간 (권역별 팀편성 : 평생교육사 현장에서의 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 둘째 날(9월 18일(금))

시 간	주 요 내 용
9:00-10:3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컨설팅(Ⅰ)
10:30-10:40	휴 식
10:40-12:3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컨설팅(Ⅱ)
12:30-	종강식

※ 위의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제2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지도자 과정) 운영 일정

○ 운영기간 : 2009년 9월 17일(목)

○ 운영 일정표

시 간	주 요 내 용
10:00-10:30	개회식 사회: 이해영(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장) 인사말 : 박인주(평생교육진흥원장)
10:30-11:00	<기조강연> 평생교육사의 새로운 비전(역할 및 비전 개발)
11:00-11:10	휴 식
11:10-12:10	<공통강좌> 평생교육의 철학적 재구성 및 역사적 재이해
12:10-13:10	중 식
13:10-14:30	평생교육 정책의 이해(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동향 및 변화추이)
14:30-14:40	휴 식
14:40-16:00	평생교육법의 이해(사회교육법, (구)평생교육법, (개정)평생교육법)
16:00-16:10	휴 식
16:10-18:00	평생교육기관 경영자 네트워크의 시간 (권역별 팀편성 : 평생교육기관 현장에서의 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 위의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진① (3×4cm)		2009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마시오.							
신청과정명	1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실무자과정)				2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지도자과정)				
① 평생교육사 자격	자격취득기관명				자격증 급수				
	자격취득기관구분 (해당항목표기)		평생교육사양성지정기관()		대학(교)양성과정()		대학원()		
신청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이수증발송주소)				⑤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e-mail:			
⑥ 최종 학력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학교명		전공 또는 부전공학과명		학위등록번호		
⑦ 근무 경력	①근무기관명		⑧근무기간		⑨개월 수	⑩담당업무			
			부터(년월일)	까지(년월일)					
		총계(개월 수)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2009년도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시 유의사항 1. ①의 내용은 평생교육사자격을 취득한 기관을 기재하고 해당되는 자격취득기관구분에 ‘○’표시 2. ⑥의 학력사항은 고등학교 학력에서 최종 학력까지를 기재 3. ⑦의 근무경력에서 ①에는 현재까지 근무했던 평생교육기관(시설)명을 기재하고, ⑧에는 근무기간을 표기(년, 월, 일 표기), ⑨에는 근무 개월 수를 명확히 기재, ⑩에는 담당업무 를 상세하게 기재 ※ 부족한 칸은 늘려서 활용 가능									

[붙임 2]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I.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공무원(), 근로자(), 강사()		
직급		직위	

II. 기관사항

기관명		평생교육담당부서명	
기관구분	1군(), 2군()		

III. 경력사항

소속 부서	근무 기간	근무 개월수	상세 담당업무	고용 형태	1주일 근무시간수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기관장명(인)

※ 작성 시 유의사항

㉠ 위의 내용이 허위내용일 경우에는 자격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담당업무]는 평생교육 경력사항을 인정하는 주요한 부분이므로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직무영역 : 조사 및 분석, 기획 및 계획, 네트워킹, 프로그램개발, 운영 및 지원, 교수 및 학습, 변화촉진, 상담 및 컨설팅, 평가 및 보고)

㉢ [고용형태]는 아래의 보기에 따라 번호를 기재합니다.

구분	직군	번호	고용형태
1군	공무원	①	경력직공무원
		②	시간제근무공무원
	근로자	③	통상근로자
		④	단기간근로자
	강사	⑤	전임강사
		⑥	시간강사
2군	공무원	⑦	경력직공무원
		⑧	시간제근무공무원
	근로자	⑨	통상근로자
		⑩	단기간근로자
	강사	⑪	전임강사
		⑫	시간강사

㉣ [1주일 근무시간 수]는 고용형태가 ①,③,⑤,⑦,⑨,⑪인 경우에는 40시간으로 기재하고

②,④,⑥,⑧,⑩,⑫인 경우에만 1주일간의 근무시간 수를 기재합니다.

㉤ 동일기관에서 소속부서가 여러곳일 경우에는 [III. 경력사항]의 표를 늘려서 활용합니다.

㉥ 근무경력이 여러 기관에서 있을 경우, 각 기관별 1매씩 개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